

한-미 FTA 원산지 절차 요약

구분		한미 FTA								
발효일자		2012. 3. 15.								
협정국		미국								
원산지 증명서	발급주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서식	[권고서식]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9서식 또는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항목을 기재한 서류(정형화된 양식 없음)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항목[협정문 제6.15조 2항]- 8개 항목(아래 참조)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4년								
	제출면제기준	미화 1천 불 이하의 소액물품								
	참고사항	[협정적용 영역]미국 50개 주, 워싱턴 DC : 원산지 부호 US, 푸에르토리코 : 원산지 부호 PR ⇒ 광, 사이판 등 그 밖에 미국의 자치령은 협정대상 아님 C/O는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 WO :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PSR :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 PE :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WO (Wholly Obtained), PSR (Products Specific Rules), PE (Produced Entirely)								
부가가치 계산 방법	계산방법	공제법(BD : Build-Down Method), 직접법(BU : Build-Up Method), 순원가법(NC : Net Cost Method) * 자동차 및 그 부분품은 직접법, 공제법, 순원가법 선택적 사용								
	부가가치기준	직접법 30~40%, 공제법 35~55%								
	기준가격	조정가격(FOB)								
	비고	순원가 : 총원가에서 공제비용*을 제한 가격(자동차 및 그 부분품에 한하여 적용) * 공제비용 : 판촉, 마케팅, 판매 후 서비스, 로열티, 운송·포장 및 포장, 이윤 및 허용범위를 벗어난 이자비용								
역외 가공	품목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사항 결정								
	지역									
	가공비									
제3국발행시송장		가능								
원산지 검증	검증	검증방법	직접, 간접(섬유류)							
		검증주체	수입국 세관, 수출국 세관(의류 및 섬유)							
	회신	회신기간	12개월 이내 수출국 결정							
		회신주체	직접 - 수출자, 간접 - 수출국 세관							
	미회신 조치	협정관세 적용 제한								
	근거조항	제4.3조(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 제6.18조(검증)								
참고사항		<p>■ 수리 또는 가공*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면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4항</p> <table border="1"> <tr> <td>1.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td> </tr> <tr> <td>2. 한국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td> </tr> </table> <p>* 수리·가공을 초과하는 범위 -[참조]협정 제2.6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p>■ 한-미 FTA는 HS2002 기준으로 협상타결"연계표(HS2012 ↔ HS2002)"를 참고하여 작성</p> <table border="1"> <thead> <tr> <th>서류명</th> <th>품목번호 작성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td> <td>HS2002</td> </tr> <tr> <td>수출입신고서</td> <td>HS2012</td> </tr> </tbody> </table> <p>■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항목[협정문 제6.15조 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⑤ 물품의 HS 품목번호 및 품명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자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1.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2. 한국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서류명	품목번호 작성기준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HS2002	수출입신고서	HS2012
1.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2. 한국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서류명	품목번호 작성기준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HS2002									
수출입신고서	HS2012									